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8

2017-8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5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장애인문화예술발전을위한지원방안 1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약자를 위한 열정과 공감 없이 설계된 서울로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2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7)
▶ 전라남도 5 · 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 (9)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1)
▶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 (14)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17)
▶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 강화군 관광홍보요원 · 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22)
▶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4)
▶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26)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장애인문화예술발전을위한지원방안 (29)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약자를 위한 열정과 공감 없이 설계된 서울로 (39)
▶ 강원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원주 중앙시장 현장방문 (40)
▶ 전라북도의회 스카우트 활성화 위해 가산점제도 부활해야 (41)
▶ 경상남도의회 고운 최치원의 발자취와 돋섬 세미나 개최 (43)

최근 제 · 개정 법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46)
▶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50)
▶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54)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8.9.] [부산광역시조례 제5620호, 2017.8.9., 제정]

□ 주요목적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 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 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방송장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를 통하여 재난전파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③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관공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7. 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② 시장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17.8.11.] [대전광역시조례 제4986호, 2017.8.11., 제정]

□ 주요목적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공정관광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전라남도 5 · 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8.10.] [전라남도조례 제4338호, 2017.8.10., 제정]

□ 주요목적

5 • 18민주화운동 관련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 • 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적지를 민주 • 인권 및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5 • 18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 • 세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 란 5 • 18민주화운동(이하 "5 • 18" 이라 한다)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유물" 이란 5 • 18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

제3조(사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5 • 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 • 관리 등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적지가 훼손 • 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은 5 • 18 사적지와 유물이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 및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참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5 • 18 사적지와 유물이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5 • 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 •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5 • 18사적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18 사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 5·18 유물의 지정 및 보존·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5·18 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18 사적지 및 유물의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기념사업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가 수행한다.

제8조(사적지 지정 등) ① 사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공보)나 누리집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적지 구조변경 협의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관리·복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념사업 조례 제14조와 연계하여 5년마다 5·18 사적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적지 관리) 도지사는 사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프로그램 개발 등) 도지사는 사적지를 5·18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18 사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8.1.] [광주광역시조례 제4938호, 2017.8.1., 제정]

□ 주요목적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 · 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 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5.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8.11.] [전라북도조례 제4448호, 2017.8.11., 제정]

□ 주요목적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돌봄 교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돌봄교실"란 도내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장소를 말한다.
2.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도내 학생들이 무장애 돌봄교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은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교실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돌봄교실 시설 확충
2. 무장애 돌봄교실 개선 인센티브 제공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그 밖에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무장애 시설 인증) ① 돌봄교실 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②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안내한다.

제7조(무장애 돌봄교실 조성 지원) ①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로 개축 또는 보수를 하려는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8.14.]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05호, 2017.8.14., 제정]

□ 주요목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위치) 성남시 목공체험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72(은행동)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 (이하 "체험장" 이라 한다)이란 목공체험실, 창고 등을 포함한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 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관리자" 란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맡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전문가에게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 위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3. 제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체험장 휴장의 경우에는 휴장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따른다.

제8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정보의 교육
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각종 홍보
3.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교육 및 강사 등) ① 시장은 체험장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 등의 교육을 관련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사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신청 및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2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 ①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체험료 등을 다음날 업무 마감 전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체험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거나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목공체험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5조(체험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1. 체험자의 사유로 예약 또는 참여를 취소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목공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하거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8.14.]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229호, 2017.8.14., 제정]

□ 주요목적

부천시 안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 전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활동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체계적 안전 활동과 활발한 시민안전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 사회 조성을 위한 안전 활동 참여 민간단체 평가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조례는 부천시 지역의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의식에 기여하는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활동" 이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봉사활동, 캠페인, 교육, 신고, 점검, 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다.), 홍보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부천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부천시 산하 기관에 속하지 않는 단체(민간기업의 안전 활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의 안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조정
2. 다양한 안전 활동사업의 발굴과 건의
3. 안전 활동 단체의 현지조사 및 문제점 개선제안

제5조(심의 위원회 평가) ① 위원회는 활발한 안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평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

1. 정기평가 심의 : 공개모집된 민간단체의 안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조정
2. 수시평가 심의 : 심의 의원회가 민간단체의 안전 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서류 및 현장조사 평가

② 위원회는 원활한 안전 활동과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타 지역 안전 활동 사례를 견학할 수 있다.

제6조(안전 활동사례 공개 모집) ① 시장은 안전 활동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활동 단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된 안전 활동 사례를 심의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관내 경찰서 서장이 추천한 공무원
3. 부천소방서 서장이 추천한 공무원
4.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5. 부천시 안전 활동 관련 공무원
6. 안전 활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과 부천시 안전활동 관련 공무원인 환경 · 교통 · 도로사업 담당 실 · 국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 제척 · 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매년 안전 활동 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강화군 관광홍보요원 · 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시행 2017.8.14.]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346호, 2017.8.14., 제정]

□ 주요목적

강화군의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서포터즈 및 관광블로거, 관광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서포터즈" 란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강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각종 관광행사,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블로거" 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이 운영하는 관광블로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군의 관광행사, 관광프로그램,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모니터" 란 군의 관광발전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의 관광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촉) 군수는 관광서포터즈 및 관광블로거(이하 "관광홍보요원" 이라 한다), 관광모니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는 각각 30명 이내에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촉 자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군수는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는 문화 · 예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2.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
3.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신분증, 명함, 단체복 제작
4. 교육, 연수 및 우수 콘텐츠 원고료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불편사항 개선 등 관광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에게 포상할 수 있다.

4.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8.17.]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287호, 2017.8.17., 제정]

□ 주요목적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3. 인터넷 ·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8.16.]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285호, 2017.8.16., 제정]

□ 주요목적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세대
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4.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 · 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남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17. 7. 28.(금) / 충남도청 문예회관 107호 >

총 평

이번 토론회는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지원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과 향후 폭 넓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모델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실태 및 현황파악,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협력기반 구축 및 관련 제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우주형(나사렛대학교) 교수>

❍ 장애인도 문화적 권리의 주체로서 당당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로 인해 지금까지 사치품으로 취급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조례(11개 광역 시·도) 비교 고찰 및 개선안 제시

(조례 개정)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단체) 설치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요건 완화

(예산 확보) 장애예술인의 창작품 우선구매 등 창작예산의 별도 확보

❍ 충남의 장애인 문화예술시책 제안

- 공연장 등의 편의시설 개조 및 접근성 확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및 창작지원예산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및 지원 금액 현실화,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인력 배치 내지 전담부서 설치,
- 장애인 공연쿼터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장애인 예술강사 양성,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단기 및 중장기적 과제를 고려한 문화정책 시행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인 관련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만이 아닌 장애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자유롭고 다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성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접근,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활용하는 현장 배치,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한 영역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지정토론 (5인)

① 박근식 지휘자(장애인합창단 꽃다지)

❍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은 의사소통의 한 방법

❍ 문화예술에 대한 음악적·예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조인력의 필요

- 장애인들과 앙상블을 할 경우 연주을 배우는 시간 전까지 기초적인 악기의 이동 및 기초교육으로 장시간 소요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복지사 배출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 문화예술을 배움으로써 성장하고 사회성 및 협동성을 기르고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② 이은희 대표(충남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 장애인 문화예술은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지원금액에 1%도 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장애예술가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

❍ 문화예술은 누구나 표현하고 향후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예술창작 활성화지원,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예술창작 공간의 확충,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장애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하 종합 정보관리 및 문화예술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 필요

③ 이종화 의원(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장애인들과 관련된 복지·체육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 임에도 관련 예산이 미약한 상태

❍ 충남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코자 함.

④ 조민두 기획·총감독(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 문체부를 제외한 광역 시·도, 시·군·구, 지역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의 지역분권화 필요

❍ 예술에 관심 있는 장애인 또는 실력을 갖춘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점화가 필요

※ 거점화는 문화예술을 배우고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 가능,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정책적 시스템 운영,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과 문화예술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⑤ 이존관 과장(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충남도 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정책, 전문 인력 양성, 협력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

❍ 타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하고 좋은 사례를 접목하고, 창작·공연·전시 등 활동,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계획

❍ 발제자가 제시한 조례의 문제점을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3 청중토론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현실성에 대해서

- 조민두 감독님 제안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에 대한 대전제는 동의하나 대한민국은 아직 비장애인들도 예술만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데 장애인이 예술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할 만큼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 장애예술인들이 일반인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노인, 취약계층 앞에서 공연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

- 도청 근처에 문화예술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곳에 장애인예술센터 설치할 경우 접근성과 이동편의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며, 그보다는 각 지역의 소규모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어떻게 커버해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함

[질의: 유영운]

⇒ 충남에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성찰을 하고 인프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번 토론회를 위해 충남의 장애 예술현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관련 데이터가 없었음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술가 입장에서 한사람, 두 사람을 이끌어 내고 전시, 공연, 뮤지컬을 만들고 하면서 소심하거나, 관련 단체가 없거나 몰라서 나오지 못하는 예비 장애예술가 굉장히 많았음

문화예술단지에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인입장에서 발걸음을 때는 입장에서 용기 등의 부족함이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함

각 지역별로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며,지역의 거점화 의미는 전문적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생겨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계적·통합적으로 장애예술가들을 지원·육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화 센터도 필요하도 생각됨

몇 년 전부터 어떻게해야 장애예술인들을 이끌어내고 공연에 참여시키고 해야하는지 충남의 장애문화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얻고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답변 : 충남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이은희 대표]

⇒ 문화예술의 측면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첫째, 장애인으로써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향유권, 공통적인 상황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달라는 부분의 측면

둘째, 전문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이것이 이 분야에서 이야기한 일자리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

셋째,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환경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환경작용이기도 하며,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퇴화를 막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측면도 있음

장애인들의 공연을 장애인들이 본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술 공연일뿐이며, 주최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들도 있다는 것과 관련자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다는 것 뿐임.

문화예술시설과 관련하여 극장, 예술관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모든 관람석에는 규정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하고 있음.

만약, 충남에서 전국의 척수장애인협회인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환경을 유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만 함께 사는 공간이라 할 것임

건물과 관련하여 소극장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장애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연장도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 것임

이동서비스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대한민국 사회가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되고 모든 도로시설이 저상버스가 제대로 승하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비장애인들처럼 버스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교통여건이 사회적으로 마련된다면 특전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함.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열악한 장애인 예술인과 단체의 자부담에 대해서

- 2012년부터 여성장애인 희망나래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사업비 지원으로 매년 2~3회 대회를 참가하고 비장애인합창대회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부담분 매칭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받을 수 없었고 올해는 한 번의 대회를 선택한 것이 아마추어와 프로합창단이 참가하는 충남합창대회였고 동상을 수상하였음

-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은 장애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이 문화예술에 한 맥을 잇는 것이 장애예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함.

- 전국대회에서도 상을 받을 만큼 아무리 많은 실적으로 내고 비장애인들에게 인식개선을 시키고 어떤 시립합창단과 도립합창단보다 뛰어나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부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음

- 문화예술을 함에 있어서 열악한 경제적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부담까지 매칭할 경우 문화예술을 도저히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조례 또한 의미가 없게 될 것이며 단지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일 것임

- 올해 또는 내년에 문화적인 사업을 할 때 있어 자부담 매칭이 되는지 이로인하여 또 다른 열악한 예술인과 열악한 단체가 능력이 됨으로도 자부담을 못맞춰서 관련 사업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질의 : 사단법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자부담 생기는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업비를 다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책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착실하고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에서 자부담이 있음

의정토론회에 참석하신 예술단체 대표분들과 만나서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 협의하도록 할 것임.

[답변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이존관 과장]

⇒ 조례에 전문예술인 지원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이며, 오래전에는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누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논재가 생김으로 인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함으로 어느지역에서 어느분들이 잘하고 있으니 지원도 하고 이분들이 다른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등의 체계들을 구성하는 것이 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의 역할이라고 봄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등을 하다 보니 학교의 음향 및 공연과 관련된 운영시설이 열악하며,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님들이 참여해야 함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음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인식개선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 등이 관공서 안에서 가정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고 있듯이, 충남에서도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 또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는 공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정말 부모가 아닌 실무자를 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얼쑤가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자 하나 없이 일을 하고 있음 사업계획서 작성도 많이 어렵다 거점화를 할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장애예술을 하는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예술단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이부분에 있어서 궁금함

[답변 : 발달장애인전통문화예술단 얼쑤 대표 이창숙]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선 및 보완
3.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의 확대 및 인식개선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와 현황 파악 및 관련 의견 수렴
-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및 인권을 기반으로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누릴 권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서울특별시의회

약자를 위한 열정과 공감 없이 설계된 서울로 유니버셜 센터 건립해야!!

우창윤 의원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야심작인 7017 서울로에 대해 "2% 부족한 서울로"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우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7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뉴욕에 위치한 하이라인 파크와 7017 서울로를 비교하면서 시정질문을 이어나갔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에게는 서울로와 연결된 중림동 광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후 장애인은 접근 할 수조차 없는 공연장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이 곳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도 하나 없고, 휠체어 하나 조차 들어갈 수 없게 공간을 설계했다", "본부장님의 예술작품이라는 답변도 변명에 불과" 하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연결로를 만들어둔 하이라인파크의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이런 디자인의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공연을 즐기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박원순 시장에게는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 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서울시의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며,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의 건립을 통해 이러한 도시환경이 속히 조성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원주 중앙시장 현장방문

강원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회장 박현창 의원)는 8월 9일 '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현장탐방 및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원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대형마트, 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기 위해 ' 15년 4월 구성된 '도의원 연구모임'이다.

연구회는 이번 「원주 중앙시장 현장방문」에서 시장의 구석구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 박현창 회장은 "그간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도내 전통시장 순회방문 행사가 많이 알려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행사들이 당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론에 지속 노출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스카우트 활성화 위해 가산점제도 부활해야

최인정 의원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유치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레져용지에 'Draw your Dream' 이란 주제로 168개국 청소년 5만여명이 참가할 잼버리대회에 주인없는 잼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면서 도내 각급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문했다.

특히, 주인없는 잼버리가 되지 않고 성공적인 잼버리를 개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스카우트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부여 등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승진가산점 부여대상 지도교사에게 연평정점 0.05점과 상한점 0.5점을 부여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월 0.025점, 상한점 0.2점으로 하향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7년 말까지 취득한 점수만 인정돼 그만큼 지도교사의 매리트가 사라진 것이다.

각급 학교 스카웃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인데, 일반 교사 업무와 함께 단체활동까지 하는 교사들에게 아무런 유인책 없이 지도교사 활동을 요구하는 것.

최인정 의원은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에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 한국 유치는 한국스카우트 100년의 역사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대회" 라면서 "스카우트 정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 정부, 해당 각 시군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경상남도의회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발자취와 돝섬" 세미나 개최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학연구회(회장 박삼동 의원)는 8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돝섬(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관광안내센터 2층 에서「고운 최치원의 발자취와 돝섬」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경남학연구회에서는 "경남을 빛낸 인물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2014년 12월에「제2의 유관순, 조수옥 여사」, 2015년 10월에 「김원봉열사를 단장으로 한 일제강점기 조선의열단 활동상을 재조명」, 2016년 10월「실천궁행의 지식인, 남명 조식」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에는 네번째 행사로「고운 최치원의 발자취와 돝섬」세미나를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정신문화의 사표로 추앙받아 왔던 최치원 선생의 활동과 경남에 남긴 발자취를 조명하고자 경남대학교 고운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돝섬은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한 기우제터, 석불 등 유적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이며, 그 외에도 창원지역의 월영대, 고운대, 합천의 해인사, 거창의 고운정, 함양의 상림숲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도 우리 도민 상당수가 최치원 선생이 경남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최치원과 관련된 경남의 인연을 도민들에게 두루 알릴 수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남대 국어교육과 노성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송성안 박사의 사회로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경남대 한정호 교수(고운학연구소 운영위원), 경남신문 정민주 기자, 서울일보 최태희 경남본부장이 돝섬을 중심으로 한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와 역사적 의의, 발전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삼동 경상남도의회 경남학연구회 회장은 "우리 경남이 고운 최치원이라는 우수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에서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남을 빛낸 인물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39호, 2017.8.9., 제정]

□ 제정이유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566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의 지급범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의 인정기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유형(제2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규정함.

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범위(제19조 및 별표 2)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부담한 치료용 보조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등 비급여대상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요양생활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천분의 342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 운영(제31조)

특별구제계정의 관리 · 운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의 인정 기준(제32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 중 가습기살균제에의 노출과 건강상 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고 건강상 피해의 정도가 중증(重症)이거나 지속적인 사람은 특별구제계정에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 징수 등(제33조, 제35조 및 제37조)

1) 폐업 · 부도 · 파산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규모, 판매량 등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납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2)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 또는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8.17.] [대통령령 제28246호, 2017.8.16., 제정]

□ 제정이유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제2조)

1) 국가연락기관인 외교부장관은 국가연락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에 다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현황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연락기관인 환경부장관은 국가연락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국가책임기관 및 그 소관 유전자원 등에 관한 정보,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절차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등(제4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며,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19조 관련)

[의견17-0176, 2017.8.4, 대구광역시]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에서는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동구 조례안"이라 함) 제17조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한 경우,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 밖에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항), 이와 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은 수탁자의 권한으로 보이므로, 동구조례안 제17조 제4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자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제한하거나 수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의 운영주체로서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비롯한 운영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어린이집을 설

립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휘·감독 권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법 2007. 8. 30. 선고 2007누3734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령 및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동구청장은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임면권을 행사 할 권한이 없이 단순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구조례안 제17조제4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의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제한하거나 임면권자인 수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라 임면권자인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동구조례안 제17조제4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령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와 원장 및 보육교직원 간 체결한 근로관계를 조례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의견17-0191, 2017.8.4, 경기도]

【질의요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왕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현행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왕시조례"라 함)에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원의 신청(제5조), 지원 신청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제10조) 및 지원 결정(제6조) 등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의왕시조례안"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식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 외에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밖청소년조례"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급식경비 지원대상으로 규정(안 제4조제3호)하고 있으며, 의왕시장은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의 장에게 지급한다고 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하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종전 심의사항인 "학교급식 지원대상 각급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지원의 대상을 종전의 "학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조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하는 급식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조례를 개정하여 학교밖청소년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에 대하여도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교급식법」이나 「유아교육법」에서 학교급식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어 의왕시가 학교급식의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한 의왕시조례는 특정한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위임조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조례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의 소관 사무 중 관련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데에 법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의왕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상담지원), 제9조(교육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자립지원)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왕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55 참조).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으로 "학교"를 지정하고 있을 뿐, 학교밖청소년조례에서 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급식법」으로는 급식 경비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책무 규정만으로는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왕시가 의왕시조례안을 입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의 학교밖청소년조례 제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지원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왕시조례안과 같이 입법하는 방안이 학교밖청소년조례를 개정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보다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입법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7 년 8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3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